



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

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

2026. 9. 10.



고용노동부



위임 범위



지방 정부 위임



대상: 30인 미만 사업장(사전 협의된 명단)



범위: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 사업장
감독 및 사후 조치(수사, 과태료 포함)



위임 제외



진정·고소·고발 등 신고사건



노동관계법 관련 각종 인·허가



노동조합법·공무원·교원노조법·근참법,
파견법, 중대재해처벌법(6개 법률)

목표

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노동감독 체계 구축

1 준비

지방 노동감독 기반 마련



① 법·규정·예산



② 전문성 확보



③ 시스템·평가

2 협력

중앙·지방이 함께 일하는 체계 구축



① 협의체 운영



② 중앙-지방 협력사업 확대



③ 중앙감독관 지원

3 실행

지방 노동감독 실시



① 자체계획 수립 및 수행능력 점검



② 위임 대상 선정



③ 사업장 감독



④ 수사



⑤ 위임사무 관리

감독 착수 전 첫번째 기반 - 법·규정·예산 마련

법령, 규정 - 11월까지 완비



조직인력구성 가이드 라인
(완료, 3월)



「직무집행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
(법 시행 전)



집무규정(훈령) 제정
(법 시행 전)

예산 - 3대 원칙

01



처우 균형

중앙·지방, 각 지역 간
감독관 처우 균형

02



직접 경비

감독 수행에 직접
수반되는 경비 중심

03



일괄 편성

교육·전산 인프라는
노동부 일괄 편성

지방노동감독관 배치 및 전문성 확보

ILO협약(제81조)에 부합하는 자격 훈련 독립성 보장



조직·정원

- ✓ 감독 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 (조례 개정)
- ✓ 행안부, 감독관 기준인력 120명 수시 배정('26.7.7.)
- ✓ 조직·인력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 설치
- ✓ 기업·일자리 부서와 분리



채용·전보

- ✓ **(공채)** 지방정부, '27년 정기채용 일정에 맞춰 채용계획 수립
 - 노동부, 인사처에 노동직류 시험출제 수탁
- ✓ **(경채)** 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
- ✓ **(전보)** 인·허가·기술·특사경 경험자 우선



교육

- ✓ 감독사무를 표준화한 매뉴얼 개발 및 실습 중심 교육과정 신설
- ✓ 전담조직 신설, 인력 배치 즉시 맞춤형 교육실시(10~11월, 8주)
- ✓ 파견 중앙감독관 주관 학습 조직 운영
- ✓ 노동부 수사전문 교육 과정 참여 기회 부여

임명절차 및 독립성 보장

자격 법정화

시·도 4급~7급 中 노동부장관 정한 교육 이수자만 임명(8·9급은 지방공소청장 지명, 법개정 필요)

* (직급) 감독 전담 조직(局 설치) 등을 고려하여 직급 상향 검토 가능



임명 절차

1단계



사전 협의(시·도지사 → 최소 **14일** 전 요청)

2단계



의견 송부(노동부장관 → **7일** 내 서면 송부)

3단계



사후 보고(시·도지사 → 임명 후 **7일** 내 보고)

임명 해제 조건

- 감독 부서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,
- 위임 업무와 관련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경우

독립성 보장

- 시도지사, 상급자는 지방감독관에 불리한 처우 또는 부당한 지시·간섭 금지
-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 지방감독관은 노동부장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가능

업무 기반 시스템 마련

🔍 지방감독 전산 시스템- 2단계 구축

1단계

'26년
간이 시스템



감독 업무 처리,
기존 노사누리 정보 개방

(~11월 개발 ⇒ 12월 개시)

2단계

'27년
전용 시스템



지방정부 전용
노동정보시스템 오픈

📋 위임사무 평가

('27년 위임사무 사전점검 → '28년 합동평가 추진)

필수-보완 요건으로 이원화된 자가점검표 형식 점검

조직.인력

- ▶ 전담부서 신설 조례안 상정 및 확정
- ▶ 행안부 기준인력 최소 40% 이상 배치



교육.예산

- ▶ 감독 인력 교육 수료 완료
- ▶ 매칭 예산(지방비 30%) 확보



감독계획

지방정부 자체 감독 운영계획 수립



중앙 - 지방 협의체 운영(법 제32조)

목적

감독 권한 위임사무의 통일적 적용, 중앙·지방 노동감독관의 효율적 사무 처리 등을 위해 중앙-지방 협의회 설치·운영(법 제32조)

전국노동감독협의회(연 1회 ↑)

- ✓ 의 장: 노동부장관
- ✓ 위 원: 시·도 부단체장, 관계 부처 차관 등
- ✓ 협의사항: 감독 권한 위임대상 선정, 근로기준·안전보건 통일적 적용, 지방감독관 역량 강화, 전국 단위 중앙·지방 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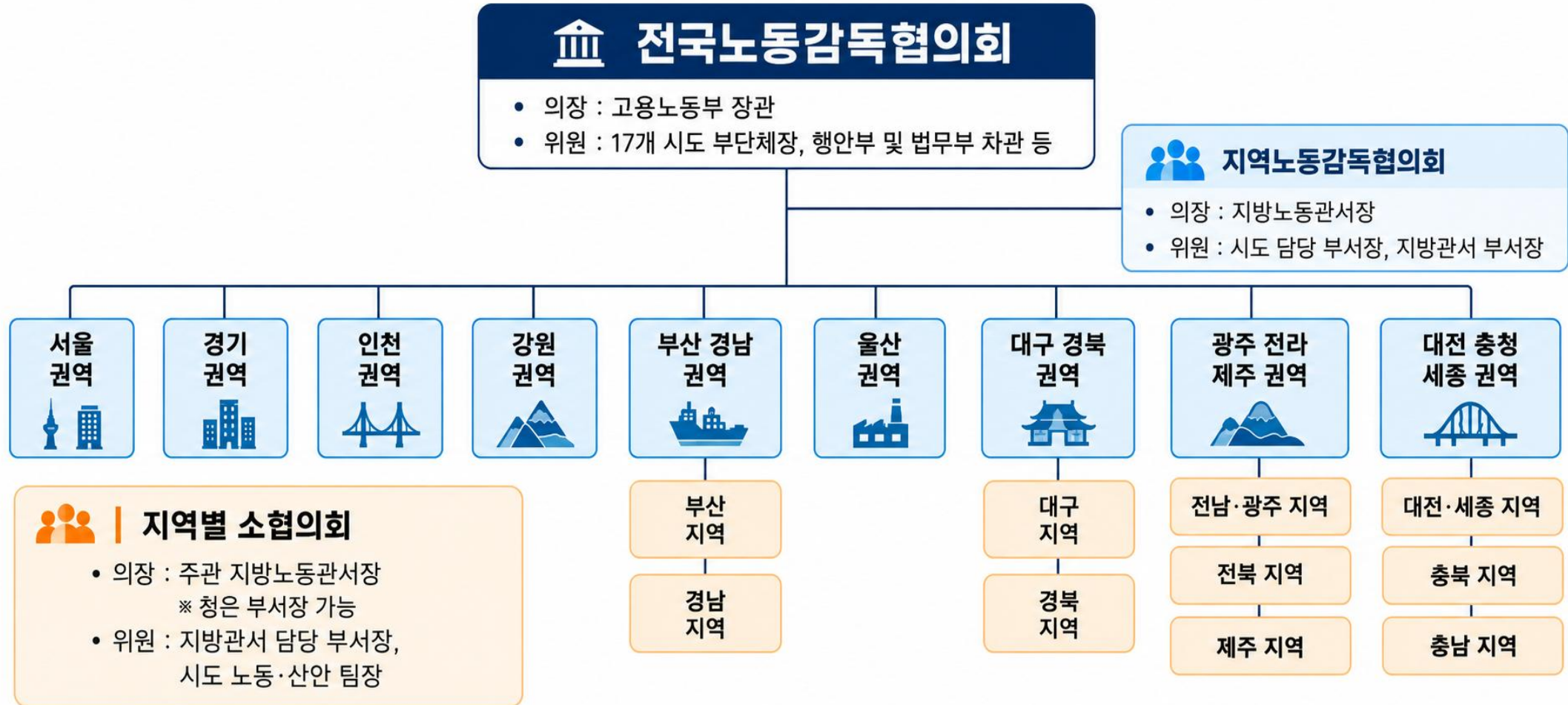


지역노동감독협의회(연 2회 ↑, 9개 권역)

- ✓ 의 장: 지방노동청장
- ✓ 위 원: 관내 시·도 감독 부서장, 지방노동관서 노동·산업안전보건 감독 부서장
- ✓ 협의사항: 위임대상 초기 검토, 지역내 감독 정책 수립 및 효율적 감독 방안, 지역 차원 협업 및 우수 사례 공유·확산



협의회 체계도



「지역 기초노동질서 합동 점검 및 컨설팅」 추진



추진 배경

- ✓ 지방정부 감독 역량 제고(현장 실무 경험 축적)
- ✓ 지방노동관서-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취약 분야 발굴, 개선(지역노동감독협의회 논의, 5월 완료)

01

지방정부 보유정보



노동권익센터 상담·민원 등
정보로 사각지대 발굴

📍 서울, 광주, 충남, 울산

02

취약노동자 다수 고용



외국인, 농·어업 등
근로조건보호 취약 노동자

📍 강원, 전북, 충북

03

인·허가권·수탁기관



지방정부 인·허가권 등
관리 권한보유 분야

📍 대구·경북, 대전·인천, 세종, 충북

04

체불 다수 발생 업종



노동권익센터 상담·민원 등
정보로 사각지대 발굴

📍 경기, 부산, 제주

중앙감독관 파견

필요성

- ✓ 지방정부 감독역량 보완 및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 중앙감독관 파견

* 「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」(제33조):
중앙감독관 시도 파견 근거 규정

역할

- ✓ 감독·수사 소과정에 실질적 “내부지휘·점검자” 역할

시기·규모

- ✓ '26년 감독조직 구성된 시·도에 우선 파견(1~2명 내외)
- ✓ 감독 조직 규모·물량 등을 고려하여 인원 결정

지방노동청 현장 멘토링



- ✓ 지방감독관 현장 배치 후 사업장 감독 시 현장(실무) 멘토링 실시(8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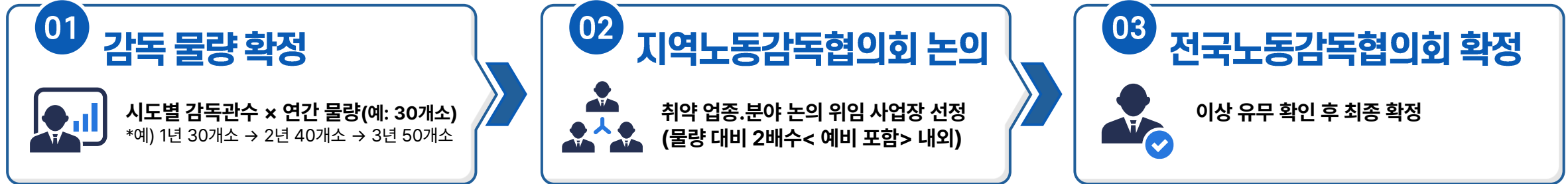
점검반 구성



운영 방식

- ✓ 지방감독관(2명) 및 중앙감독관(1명)으로 감독반 편성
- ✓ 지방감독관이 담당 위임사업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되, 중앙감독관이 동행하여 조언·지원·환류

위임대상 사업장 선정절차 및 방식



대상제외(감독 실익이 없는 경우)



- ✓ 폐업·휴업·근로자 없음 등 감독 실익이 없는 경우
감독 대상에서 제외

이에 대비하여 감독물량 <예: 예비 포함 2배수> 선정

대상 추가·변경



- ✓ 사회적 이슈 및 산업재해·사고로 특정 업종·분야 긴급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
위임 대상 **중도 추가·변경 검토**

예시

복지시설 긴급 노무관리 점검,
특정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
긴급 점검



3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부가,
30인 미만은 자치단체가
각 감독 수행

사업장 감독 실시

실행원칙 - 지방정부 감독 특성에 맞는 사업장 감독 원칙 정립

1 선택·집중

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직결,
다수 위반항목 중심 점검



2 표준화

감독관 재량 최소화,
감독의 표준화 시스템화
(체크리스트·판단표, 임금·퇴직금·연차 등
계산 모듈 제공)



3 예방 중심

적발·처벌보다 예방 목적
영세 사업주의 노무관리 지원 중심



시정기회 우선 부여

감독 실시 - 감독 일반 절차

✓ 감독 시 사전 교육, 2인 1조 원칙(상호 검증 및 점검 지원) 등 감독 절차 준수 사항 엄수, 부서장은 준수 여부 최종 확인

1. 감독준비



- 감독계획 통지
- 사전 준비

2. 감독실시



- 감독(2인1조)
- 점검 실시
- 증거 보존

3. 결과조치



- 결과보고
- 시정지시

4. 이행확인



- 확인 감독보고
- (미이행 시)
수사 과태료

5. 평가·환류



- 정보 공유
- 실적 분석
- 제도 개선

노동부 수사 지원 방안

① 중앙감독관 파견

- ✓ 베테랑 중앙감독관 파견, 지방정부 내 “모든 수사”에 대해 “쫓 과정” 지휘·점검·자문

* 제주 1명 파견(9.1.자)
→ 하반기, 지방정부에 파견 수요 파악



② 노동청 지원

- ✓ 수사상 쟁점사항 적용·해석 지원

지방감독관 요청 시 노동청 즉시 지원
(전담자 지정)

- ✓ 법령 해석·적용 의견 제시

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노동부 장관 의견 제시

③ 검사 지도·조언

- ✓ 형사법상 쟁점 사항에 대해 형사법상 검사의 지도·조언 활용

- ✓ 수사 위법·미진 시 검사 보완수사·시정조치 요구 가능


추가지원

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
고난이도 수사의 경우,
“**이첩 신청 제도**” 마련
(이첩 필요성·중대성 등 검토)

이첩 절차


이첩 신청


검토·승인


사건 인계

위임사무 관리 - 단계별 조치수단

사전 단계 사전 예방 및 준비



✓ 자체시행계획 보완·변경 요구(법 제28⑧)

- 시·도 자체시행계획 법령 위반 또는
- 종합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에
현저히 미흡한 경우



✓ 위임사무 수행 능력 사전 점검(법 제28①)

- 위임하기 전 수행능력 점검

집행 단계 시정 및 개선 요구



✓ 시정 및 개선 요구(지도·감독) (법 제30, 지자법 제185)

(사유) 부실·과잉 감독, 법령 적용 오류·위반,
감독 절차 위반 등 경우

(내용) 보고·자료 제출 요구, 현지 확인·점검

사후 단계 제재 및 권한 행사



✓ 시정명령 및 취소·정지 (법 제30, 지자법 제188)



✓ 직무이행명령 (법 제30, 지자법 제189)



✓ 감사 (법 제30, 지자법 제191)



✓ 위임 권한 철회 (법 제28⑤)

(조직·인력) 감독 조직·정원 조례 개정 및 부서 신설, 행안부 '26년 수시 기준인력 배치

(교육·예산) 감독관 예정자 10월 교육 참석, '26년 지방비 매칭 예산(30%) 편성·집행

(전산·평가) 노동정보시스템-온나라 연계 협조, 감독 수행 준비사항 완비 및 점검표 제출

(합동점검) 현장 학습·멘토링을 위해 합동 감독 및 컨설팅 적극 참여

(소통·협업) 업무협약(MOU) 체결 검토 및 감독 준비·시행 시 홍보 강화

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정부 노동감독 체계

감사합니다.



고용노동부

